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230호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선불·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, 불초청 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,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과 통일(안 제2조제10항)

- 나.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(안 제3조제1항)
- 다.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(안 제10조제3항)
- 라.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(안 제11조제1항)
- 마.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(안 제11조의2)
- 바.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,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(안 제16조제1항)
- 사.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경우 금융 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24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금융소비자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

- 전자우편 : dufguf@korea.kr

- 팩스 : 02-2100-263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(전화 02-2100-2637, 팩스 02-2100-29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